

# 目 次

1. 서면 질문·답변서 .....	93
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.....	99
3. 평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.....	101
4. 1996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.....	106

# 서 면 질 문 · 답 변 서

질 문	우 강 호 의원	답 변	평 창 군 수 ( 내무과장 )
회 의			
<p>&lt; 질문 요지 &gt;</p> <p>○ '96년 7월 16일자 평창군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회의 중점내용이 무엇인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## < 답 변 >

- '96년 7월 16일자 평창군 인사와 관련 인사위원회에서는 7급이하 공무원 승진 및 6급이상 공무원 전보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
  - 심의사항은 승진 심의 22명, 전보제한자 심의 18명으로 승진자의 심의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
  - 다만 6급승진자의 경우 과거 3년 이내에 공직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화에 불이익 처분하였습니다.
  
- 회의록 첨부에 관하여는
  -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에 「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」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은 물론 그 위원 자신도 누설할 수가 없으므로 상세한 내용 설명이나 회의록 사본은 첨부할 수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# 서 면 질 문 · 답 변 서

질 문	우 강 호 의원	답 변	평 창 군 수 (재무과장)
회 의			
<p>〈 질문 요지 〉</p> <p>○ 평창군(본청,읍면포함)의 각종 공사 시행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</p> <p>. '94~'96년도에 시행한 4천만원이상의 공사중 공사명, 예산액, 계약금액, 도급자등 일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
〈 답 변 〉

붙임 자료 참조

## 사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

( 단위 : 천원 )

년도별	공 사 명	설계금액	계약금액	시 공 사			공 사 기 간		비 고
				업 체 명	주 소	성 명	착공일자	준공일자	
1995	평창배수펌프장 기계제작 설치공사	80,000	75,500	한국기계 공업(협)	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41-12	홍 광	95. 2 .27.	95. 8 .25	
	'94 상안미 선애교가설 공사(2차공사)	369,220	369,220	부영산업 (주)	춘천시 중앙로2가	김기현	95. 3 .21	95. 9 .16	
	'95 임도신설사업 공사	422,550	347,000	임업협동 조합	평창군·읍 후평리 10-1	박동락		95.11.20	
	평창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2차공사	100,000	54,549	(주)영동 건설	강릉시 포남동 1241	김영환	95. 1 .11	96. 6 . 7	
	95이승복청소년 야영장 시설 보강공사	77,000 69,312	47,971	관동종합 건설(주)	춘천시 퇴계동 887	정상윤	95.11. 5	96. 6 . 5	

## 사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

( 단위 : 천원 )

년도별	공 사 명	설계금액	계약금액	시 공 사			공 사 기 간		비 고
				업 체 명	주 소	성 명	착공일자	준공일자	
1996	간평도수로 수해복구 공사	58,532	48,840 42,820 (당초)	신한건설 (주)	진부면 하진부리 134-2	신익교	96. 3 .25	96. 6 .22	
	유천도수로 수해복구 공사	56,186	41,990	석청건설 (주)	진부면 송정리 12-1	민두식	96. 3 .25	96. 6 .25	
	유동리 고수부지조성 공사	48,000	42,000	화신건설 (주)	평창군·읍 중2리 313-2	최규택	96. 6 . 7	96. 9 . 4	
	용산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	48,789	43,290	관동종합 건설(주)	춘천시 퇴계동 887	정상윤	96. 4 . 6	96. 8 . 3	
	용평면수해복구(속사천, 홍정천)공사	49,800	44,320	(주)삼 중	춘천시 은의동526-6	윤치호	96. 4 . 8	96. 7 . 6	

## 사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

( 단위 : 천원 )

년도별	공 사 명	설계금액	계약금액	시 공 사			공 사 기 간		비 고
				업 체 명	주 소	성 명	착공일자	준공일자	
1996	대화 6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(변경계약)	55,424	49,890	(주)삼 중	춘천시 온의동526-6	윤치호	96. 4 . 8	96. 7 . 6	
	거문리, 상월오개1리 소규모시설수해복구공사	57,120	52,000	석청건설 (주)	진부면 송정리 12-1	만두식	96. 4 . 3	96. 7 . 2	
	송정2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(변경계약)	46,591	41,230	일광건설 (주)	홍천군 · 읍 갈마곡2 리 95-14	이완영	96. 4 . 10	96. 7 . 8	
	대화면 수해복구공사 (상안미4개소, 하안미1개소)	45,100	40,344	태창건설 (주)	평창군 · 읍 하리 137-60	유인섭	96. 4 . 6	96. 7 . 5	
	유포1, 3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	49,299	44,000	(주)동서 개발	정선군 · 읍 봉양리 233-1	엄규연	96. 4 . 6	96. 7 . 5	

## 사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

( 단위 : 천원 )

년도별	공사명	설계금액	계약금액	시공사			공사기간		비고
				업체명	주소	성명	착공일자	준공일자	
1996	하안미1,2,6리 수해복구 공사	42,400	36,360	(주) 선우건설	평창군·읍 중리 315-1	김정규	96.4.12.	96.5.31	대화면
	대화시가지, 대화6리, 하안미5리 아스콘포장 공사	23,491	20,884	(주) 덕천사업	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338-8	최동식	96.7.25	96.8.23	대화면 48,400
	창동~평촌리 수해복구 공사	46,922	46,922	(주) 신아건설	강릉시 포남동 1099	장석희	96.4.1	96.6.4	봉평면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6년 7월

발 의 자 : 우 강 호 의원  
의 6인

## □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심사기간은 1996년 7월 18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□ 제안이유

-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편성의 합법성·적합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.



# 심 사 계 획

1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
  - 심도있는 심사로 건전한 재정 운영
  - 신속한 의사 진행
2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
 

1996년도 제 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
3. 활동기간
 

1996년 7월 18일 (1일간)
4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— 7 인이내
5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

일 시	내 용	비 고
'96. 7.18 13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장, 간사 선임</li> <li>○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요설명</li> <li>· 검토보고</li> <li>· 소관별심사(일반회계의 세입, 세출,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</li> <li>· 계수조정, 심사의결</li> </ul> </li> </ul>	

# 평창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6. 7.

발 의 자 : 김두경 의원  
의 6인

## 1. 제안이유

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현행 회의규칙중 다소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의장·부의장의 선거시기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거시기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전반적인 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시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(안제8조제5항)
- 나. 의원 정수가 8인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어 본회의 중심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왔으나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의 기초가 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도있는 안건 심의가 어려워 본회의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항을 삽입 함.(안제25조제1항)
- 다.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"3분자유발언"제도를 도입함(안제33조의2)

## 3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 제37조의2, 제63조

## 평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, 회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.

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3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이내의 발언(이하 "3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3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원과 협의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의장·부의장 선거) ①-④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(신 설)</u></p> <p>제25조(안전심의)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(신 설)</u>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 선거) ①-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,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.</p> <p>제25조(안전심의)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33조의2(3분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	<p>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이내의 발언(이하 "3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 을 허가 할 수 있다.</p> <p>②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3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 서는 의원과 협의 의장이 정한다.</p>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

### 제37조의2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의회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63조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1996年度第2回平昌郡一般會計및  
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

# 審 查 報 告 書

1996年 7月 18日  
豫算決算特別委員會

## 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7월 8일 (평창군수)

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7월 18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4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○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('96. 7.18 상정, 의결)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( 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)

### 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일반수용비의 변경과 국·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1996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9억 5,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억 2,400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3,200만원임.

### · 세입예산중

- 일반회계는 이자수입 2억 1,000만원, 지방교부세 5억원, 도비보조금 2억 1,400만원이고
-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,200만원임.

### · 세출예산중

-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6,300만원, 물건비 4,000만원, 이전경비 4,500만원, 자본지출 9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2,400만원이 감액되었음.
- 특별회계는 자본지출이 6,2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,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.

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전문위원 신고선)

#### 가. 일반회계

##### 1) 세 입

세입은 당초예산대비 총 9억 2,400만원이 증가되어 1.1%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, 세목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, 도비보조 추가 내시 2억 1,4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며,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,000만원 세입은 제1회 추경시('96. 6. 10) 증액된 세목으로서 세입추계의 적정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.

##### 2) 세 출

-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창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일반 수용비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그외 일용직급에 대한 처우개선,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, 군정수행 유공 민간인 보상금 부족액 추가확보 등의 정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.
-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이 총 5억원으로써, 노인회관 건립 및 보수 6건에 2억 3,000만원, 마을안길 및 농로 확·포장이 7건에 2억 800만원, 간이상수도 보수 1건에 2,000만원, 도수로정비 1건에 4,200만원임.

- 국·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시설에 군비 1억원과 고길천 소교량 가설 및 제방 정비에 도비 2억원과 군비 4,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.
- 예비비 1억 2,3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부족액으로 충당을 하였음.

## 나. 특별회계

### 1) 상수도특별회계

세입은 이자수입이 3,200만원이고, 세출은 누수지점 수리비로 4,000만원, 기타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, 예비비에서 3,000만원을 감액 하였음.

## 4. 質疑 및 答辯要旨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이자수입 2억 1천만원은 1회추경이 확정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로 계상이 된 이유는?	○ 정기에탁금 이자수입을 1회추경에 이어 금번 2회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은 세외수입 재원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결손이 생기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임.
○ 감자원종장 진입로 군비 미부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있는가? 또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가?	○ 한국콘도, 용평리조트측과 협의하여 추진 할 것이며, 협의 불능시 군비로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 할 것임.
○ 풀 보상금 및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다시 증액 요구하게 된 이유는?	○ 지금까지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추가로 증액요구 하게 된 것임.
○ 농산물 직거래 유통시설 설치물 위해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, 실질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?	○ 이윤의 추구 보다는 평창군 농산물의 홍보와 농산물 팔아주기에 주 목적이 있음.

## 5. 討論要旨

【 없음 】

## 6. 審査結果

○ 수정의결(수정내역 붙임)

## 7. 少數意見의 要旨

농산물 직거래 유통시설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성립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으나, 삭감시 놓여진 후계 자연합회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예상되므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임.

## 8. 其他 必要한事項

【 없음 】

붙임 : 1.1996년도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 
경정예산안 수정의결내역 1부.

# 199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수 정 의 결 내 역

## 1. 예산총칙 수정

- 제1조 ~ 제6조 : 변동사항 없음.
- 제7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078,786천원으로 한다.

## 2. 회계별 예산 수정의결 내역

### 가. 총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지방자치 단체계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비 고
		감 액	증 액		
합 계	92,266,854	200,000	200,000	92,266,854	
일 반 회 계	84,910,445	200,000	200,000	84,910,445	
특 별 회 계	7,356,409	0	0	7,356,409	

### 나. 일반회계세출

(단위:천원)

장			지방자치 단체계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수정사유및내역
관	항	세항		감 액	증 액		
계			84,910,445	200,000	200,000	84,910,445	
( 본 청 )			74,088,645	200,000	200,000	74,088,645	
1000 일 반 행 정			15,212,830	100,000	0	15,112,830	
1200 일 반 행 정 비			13,910,765	100,000	0	13,810,765	
1210 기 획 관 리			5,924,116	100,000	0	5,824,116	
1213 예 산 운 영			5,676,840	100,000	0	5,576,8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별상여수당 △ 60,000</li> <li>○ 군정수행유공민간 인보상 △ 20,000</li> <li>○ 군정수행유공민간 단체보조 △ 20,000</li> </ul>

(단위:천원)

장			지방자치 단체계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수정사유및내역
관	항	세 항		감 액	증 액		
3000 경 제 개 발			34,422,720	100,000	-	34,322,720	
3100 농수산개발			14,759,737	100,000	-	14,659,737	
	3110 농경관리		11,007,086	100,000	-	10,907,086	
		3115 농산물 유통관리	2,920,154	100,000	-	2,820,154	○ 농산물직거래유통 시설 △ 100,000
5000 지원및기타경비			1,711,741	-	200,000	1,911,741	
5400 예 비 비			878,786	-	200,000	1,078,786	
	5410 예 비 비		878,786	-	200,000	1,078,786	
		5411 예 비 비	878,786	-	200,000	1,078,786	○ 예비비 중 200,000

# 199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(안)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6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(안)을 의결 요구합니다.

## 2. 제안주요내용

199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(안) 의결요구액은 총 9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24백만원, 특별회계는 32백만원 이며,

{ 세 입 }

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0백만원, 지방교부세 500백만원, 보조금 214백만원 입니다.

{ 세 출 }

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63백만원, 물건비 40백만원, 이전경비 45백만원, 자본지출 900백만원, 예비비및기타 △124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자본지출 62백만원, 예비비및기타 △3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
### 3. 관계법령

#### 1) 지방재정법 제36조

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.

다만,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#### 2) 지방자치법 제121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996년도 (2회추경)

#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(안)

- 115 -

예산총칙
세입세출예산

평      창      군



## 예 산 총 직

1996 년도 [ 2회추경 ]

\* 제1조 : 199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	계	별	세입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총	계	계	92,266,854	2,768,005
일	반	회	84,910,445	2,547,313
특	별	회	7,356,409	220,692
	상수도특별회계		5,237,634	157,129
	주택사업특별회계		720,001	21,600
	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	644,314	19,329
	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	566,679	17,000
	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	55,395	1,661
	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		41,866	1,255
	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		90,520	2,715

-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'과 같다.
- 제3조 :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와 같다.
- 제4조 :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백만원으로 한다.
- 제5조 :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' 조서와 같다.
- 제6조 :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'계속비조서'와 같다.
- 제7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          878,786천원으로한다.

# 예 산 총 규 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 회 계 별	예 산 액	전 년 도 (기 정) 예 산 액	증 △ 감
계	92,266,854	91,310,410	956,444
일 반 회 계	84,910,445	83,986,001	924,444
특 별 회 계	7,356,409	7,324,409	32,000
상 수 도	5,237,634	5,205,634	32,000
주 택 사 업	720,001	720,001	0
의 료 보 호 기 금	644,314	644,314	0
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	566,679	566,679	0
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	55,395	55,395	0
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	41,866	41,866	0
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	90,520	90,520	0
	0	0	0
	0	0	0

## 세입세출예산총괄표

<경제성결별>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				일반회계					특별회계					
	예산액	구성비율(%)	전년도(기정)예산액	구성비율(%)	증△감	예산액	구성비율(%)	전년도(기정)예산액	구성비율(%)	증△감	예산액	구성비율(%)	전년도(기정)예산액	구성비율(%)	증△감	
세입	계	92,266,854	100%	91,310,410	100%	956,444	84,910,445	100%	83,986,001	100%	924,444	7,356,409	100%	7,324,409	100%	32,000
	지방세	8,949,672	10%	8,949,672	10%	0	8,949,672	11%	8,949,672	11%	0	0	0%	0	0%	0
	세외수입	21,937,163	24%	21,695,163	24%	242,000	16,509,566	19%	16,299,566	19%	210,000	5,427,597	74%	5,395,597	74%	32,000
	경상적세외수입	8,026,725	9%	7,816,725	9%	210,000	6,813,343	8%	6,603,343	8%	210,000	1,213,382	16%	1,213,382	17%	0
	임시적세외수입	13,910,438	15%	13,878,438	15%	32,000	9,696,223	11%	9,696,223	12%	0	4,214,215	57%	4,182,215	57%	32,000
	지방교부세	29,523,000	32%	29,023,000	32%	500,000	29,523,000	35%	29,023,000	35%	500,000	0	0%	0	0%	0
	지방양여금	8,506,514	9%	8,506,514	9%	0	8,506,514	10%	8,506,514	10%	0	0	0%	0	0%	0
	보조금	22,350,505	24%	22,136,061	24%	214,444	21,421,693	25%	21,207,249	25%	214,444	928,812	13%	928,812	13%	0
	국고보조금	11,197,408	12%	11,197,408	12%	0	10,701,245	13%	10,701,245	13%	0	496,163	7%	496,163	7%	0
	도비보조금	11,153,097	12%	10,938,653	12%	214,444	10,720,448	13%	10,506,004	13%	214,444	432,649	6%	432,649	6%	0
지방채	1,000,000	1%	1,000,000	1%	0	0	0%	0	0%	0	1,000,000	14%	1,000,000	14%	0	
세출	계	92,266,854	100%	91,310,410	100%	956,444	84,910,445	100%	83,986,001	100%	924,444	7,356,409	100%	7,324,409	100%	32,000
	인건비	11,454,048	12%	11,390,673	12%	63,375	11,439,700	13%	11,376,325	14%	63,375	14,348	0%	14,348	0%	0
	물건비	10,313,700	11%	10,274,683	11%	39,017	9,452,180	11%	9,413,163	11%	39,017	861,520	12%	861,520	12%	0
	이전경비	6,619,061	7%	6,574,061	7%	45,000	5,879,232	7%	5,834,232	7%	45,000	739,829	10%	739,829	10%	0
	자본지출	59,438,857	64%	58,476,487	64%	962,370	54,642,761	64%	53,742,391	64%	900,370	4,796,096	65%	4,734,096	65%	62,000
	용자및출자	571,053	1%	571,053	1%	0	0	0%	0	0%	0	571,053	8%	571,053	8%	0
	보전계원	833,455	1%	833,455	1%	0	527,051	1%	527,051	1%	0	306,404	4%	306,404	4%	0
	내부거래	2,024,195	2%	2,024,195	2%	0	2,024,195	2%	2,024,195	2%	0	0	0%	0	0%	0
	예비비및기타	1,012,485	1%	1,165,803	1%	-153,318	945,326	1%	1,068,644	1%	-123,318	67,159	1%	97,159	1%	-30,000